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11 발의연월일: 2022. 12. 23.

발 의 자:한정애·한준호·장철민

송옥주 · 이용우 · 이원욱

양향자 · 김영주 · 이성만

이수진 · 김정호 · 김상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신고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은 보장기관에 위기정보를 형식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 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 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 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계량 및 검침 관련 업무 종사자
-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① (생 략)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	
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	
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	
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	
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과 그 종사자
<u><신 설></u>	24. 「전기사업법」, 「수도
	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계량 및 검침 관련 업무
	<u>종사자</u>
<u><신 설></u>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

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